

공 고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3-847호

장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공람·공고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.) 재정비촉진지구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11호(2008.04.03.)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105호(2013.04.0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36호(2023.02.0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70호(2023.03.02.)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, 2010.06.24. 조합설립인가, 성북구고시 제2015-74(2015.05.01.)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를 위한 관계 도서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06월 15일

성 북 구 청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가. 사업의 종류 : 주택재개발정비사업
- 나. 사업의 명칭 :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, 계획

- 가. 사업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5-55번지 일대
- 나. 사업의 면적 : 105,136㎡
- 다. 건축계획 : 지하3층/지상33층(1BL 지하3층/지상33층[평균 25층, 최고 33층], 2BL 지하3층/지상29층), 15개동, 공동주택(아파트) 1637세대(임대 285세대 포함) 및 부대복리시설
- 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비치된 도서 참조

3. 정비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조합장 윤찬웅)

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계로9길 33, 3층

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50개월

5. 공람에 관한 사항

가. 공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(2023.06.15. ~ 2023.06.29.)

나. 공람장소

1) 성북구청 주거정비과(☎ 02-2241-2835, FAX 02-2241-6545)

2)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☎ 02-911-7520)

다. 공람내용 :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관계도서

6. 공람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

가. 제출기간 : 공람기간 내(2023.06.15. ~ 2023.06.29.)

나. 제출방법 :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또는
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의견서 제출

7. 기타사항

가. 공람서류는 공람기간 중 제출된 의견 및 관계법령의 검토, 관련 기관(부서)의
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사업시행변경인가 공람의견서

사 업 명	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			
공 랐 기 간	2023년 06월 15일 ~ 2023년 06월 29일 【14일 간】			
대상물건지	건 물 :			
	토 지 :			
의견제출인	성 명	(인)	생 년 월 일	
	주 소		전 화 번 호	
내 용				

2023. . .